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 『Sun』지 상대로 소 제기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 첼시의 구단주 Roman Abramovitch가 『The Sun』지의 지난 9월 27일자 "Roman 구단주 : 나는 Jose를 먹어 치웠다! 첼시 구단주의 웃음" 기사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The Sun』지를 상대로 2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에는 첼시의 전 감독인 Jose Mourinho의 머리가 음식 접시 위에 올라 있고 이를 스테이크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해 막 먹으려 하고 있는 Roman Abramovitch 구단주의 모습이 합성된 사진이 실려 있었다.

Roman Abramovitch 구단주는 문제의 기사가 자신을 "비전문적이고 비능률적인 방식으로 처신해 온 것처럼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Roman Abramovitch 구단주는 공개석상에 잘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첼시의 전 감독인 Jose Mourinho를 공격하는 장면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모욕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은 물론 첼시 구단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일시적이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Roman Abramovitch 구단주는 『The Sun』지의 발행인인 News Group Newspapers가 해당 기사내용에 대해 자신에게 확인을 하거나 자신의 대변인으로 하여금 그 기사에 대해서 먼저 논평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며 더 무거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ress Gazette 2008년 2월 18일자) □

명예훼손은 극히 일부분이고, 서적 발행도 4년이나 경과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증쇄 및 판매를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

- 일본 도쿄 고등법원 판결 -

지난 2000년 일본 북해도 惠庭시에서 여성 회사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6년형이 확정된 전 동료인 大越美奈子 수형자(受刑者)가 월간지의 기사와 기사를 채록(採錄)한 문고본(文庫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新潮社 등에 문고본의 증쇄(增刷)와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 고등법원 제10민사부는 2007년 10월 18일 도쿄지법의 1심판결을 변경, 금지(禁止)를 인정하지 않는 역전(逆轉) 판단을 내리고 배상액도 감액했다.

판결에 의하면 新潮社는 「新潮 45」 2002년 2월호에 「惠庭 미인OL 사내연애 살인사건」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동년 11월에 발매되는 문고본 「살해한 것은 너다」에 채록했다.

문제된 이 기사는 大越 수형자가 살인사건 이전에, 당시의 근무처에서 발생한 방화와 절도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명예훼손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증쇄 및 판매의 금지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명예훼손은 극히 적은 부분에 한정된다. 서적이 발행된 후 4년 이상이 경과했고, 앞으로도 상당한 증쇄가 있으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액도 1심의 220만 엔에서

110만 엔으로 감액했다. 쌍방은 상고했다.
(『신문협회보』, 2007년 11월 6일자) □

Northern Rock 은행 브리핑 메모 게재 금지

Northern Rock 은행이 『Financial Times』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였다. Northern Rock 은행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배포된 브리핑 메모 중 10여 페이지 이상의 전문이 『Financial Times』를 통해 게재되자 브리핑 내용이 담긴 『Financial Times』의 출판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인 Tugendhat 판사는 Northern Rock 은행에 관해 상업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는 브리핑 메모를 『Financial Times』를 비롯한 다른 매체들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일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Tugendhat 판사에 따르면 "Merrill Lynch와 Citibank 그리고 Blackstone Group 등은 기밀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 재정 기관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그 브리핑 메모를 준비"해 왔었다. 그러나 『Daily Telegraph』지가 지난 2007년 11월 8일에 그 브리핑 메모로부터 발췌한 정보를 포함한 기사를 게재했고 며칠 뒤인 11월 13일에는 『FT Alphaville』이라 불리는 『Financial Times』의 웹사이트에 Northern Rock 은행 브리핑 메모 중 10여 페이지 이상의 전문이 게재됐다. 이는 곧바로 『Dow Jones』, 『Evening Standard』, 『BBC』, 『The Gurdian』 웹사이트, 『Reuters』 웹사이트 등에 문제의 메모에 관한 내용이 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Northern Rock 은행은 『Financial Times』와 전 세계의 "혹시 모를 사람들"을 상대로 긴급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Tugendhat 판사는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Financial Times』가 공표한 편집되지 않은 구체적인 상업 정보가 알려지는 것에서 그 어떠한 공공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Tugendhat 판사는 『Daily Telegraph』와 다른 매체들이 브리핑 메모의 발췌본을 재발행 하는 것 역시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Tugendhat 판사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출판 금지 명령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FT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중이 접할 수 있었던 브리핑 메모에 관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구체적인 정보는 법원의 상식으로 미루어볼 때 영리적으로 민감한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Tugendhat 판사는 "하지만 브리핑 메모의 요약본이 더 보도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 거라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두고 볼 때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며 브리핑 메모를 발췌해 재발행 한 것에 대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Press Gazette 2007년 11월 26일자) □

공표되기 전의 기사를 법원에 사전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로서 금지해야

기자들이 발행 이전의 기사에 대한 판사의 법적

승인을 얻기 위해 기사를 넘겨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Telegraph Group와 Thomas Cook 여행사 간의 법정 싸움에서도 지켜졌다.

이 판결이 나온 것은 호텔의 난방기구에서 새어나온 연기에 의해 지난 10월 Corfu에서 사망한 두 아이들과 관련해, 그리스 경찰의 심문을 받은 Thomas Cook 여행사 직원의 실명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 『The Daily Telegraph』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Telegraph』 소속 기자인 Caroline Gammell은 2007년 10월 12일 Thomas Cook 여행사에 연락해 『Telegraph』가 한 직원의 이름을 기사에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Thomas Cook 여행사는 명예훼손을 근거로 출판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보통 이런 출판 금지 명령 신청은 문제의 기사가 변명의 여지없이 절대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Thomas Cook 여행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The Daily Telegraph』가 문제의 기사 전체 표현을 기사에서 거명하려던 직원이 미리 확인하도록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주 판결에서 또 다른 판사인 Eady 판사는 이전 판사가 오판했다고 말하며 1989년의 Leary 대 BBC 사건의 판결을 인용했다. 그 사건에서 영국 항소 법원은 "원고가 된 매체가 기사 초안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는 법원을 검열자의 위치에 서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Eady 판사는 "종종 언론들이 보도하려고 하는 내용을 법원이 미리 볼 수 있기를 선호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보도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의 재량에 달려 있기에 그들의 계획과 바람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Eady 판사는 프라이버시를 근거로 내린 중간 판결을 뒤집었지만 그리스의 소송절차를 고려할 때 Thomas Cook 직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The Daily Telegraph』는 그리스 경찰 수사 중에 혐의가 드러난 Thomas Cook 직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기사를 싣기로 결정했다.

『Telegraph』 측 변호사인 David Price는 "미디어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판사는 신문이 발행 전에 기사 내용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종종 이해하지 못한다"며 "Eady 판사가 명백히 밝혔듯이, 기사를 발행하기 전에 법원에 기사 노출을 하는 것은 검열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7년 11월 16일자) □

애국의용군(LVF), 『Sunday World』지 상대로 PCC에 불만 신청해

준(準)군사조직인 '애국의용군'(LVF) 소속 단원들이 『Sunday World』지의 저널리스트들을 상대로 PCC에 불만을 신청했다. 이들은 "애국의용군 소속 Neil Hyde가 마약소지로 기소된 적이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Sunday World』

지가 애국의용군 전체를 마약상으로 묘사했다"며 PCC에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애국의용군 소속 Andrew King이 1997년에 있었던 애국의용군 리더 Billy Wright의 장례식에서 중요인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ndrew King을 불법 애국의용군의 일원으로 묘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unday World』지의 뉴스 부편집장 John Cassidy는 "이는 애국의용군들이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편집장은 "우리는 점잖은 시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準)군사조직의 껍데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애국의용군은 법무장관을 이용해 소속 단원의 폭력 관련 재판에 관하여 어떤 기사도 쓰지 못하도록 금지처분을 내리도록 종용한 적이 있으며 『Sunday World』지의 저널리스트였던 Martin O'Hagan은 6년 전, 애국의용군의 폭력활동을 폭로하는 일련의 기사를 작성한 후에 애국의용군 멤버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했다.

(Press Gazette 2007년 9월 27일자) □

중국 정부, 『언론의 합법적 취재는 법률로 보호돼야 한다』

- 이례적으로 취재기자의 권리 강조 -

신문·잡지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독부서인 중국 신문출판총서(總署)는 최근 뉴스취재기자의 합법적 취재는 법률로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지난해 11월 5일 신화통신이 전했다.

정부당국에 의한 엄격한 취재제한이 있는 중국에서 취재기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지침이 내려지는 일은 드문 일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보도규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피해 이미지 개선을 노린 이례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 지침은, 현재 중국 사회에서 뉴스보도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기자를 구타하기도 하고 취재기자재를 파괴하는 등 방해행위가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는 기자들의 취재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지침은 취재하는 쪽도 국가의 법률이나 직업적인 도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기사를 가지고 금품을 받는다든지 상대방에 광고비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7년 11월 13일자) □

범죄 관련자의 신원 공개 금지와 공표의 자유는 그 이익을 잘 비교형량해 결정해야

형사재판에 관한 언론 보도에 적용되는 '공개정의의 원칙'은 검시(檢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영국 고등법원 가정부(Family Division)의 장인 Mark Potter 경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죽은 아이의 사인을 조사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그 부모와 죽은 두 아이의

신원을 언론과 미디어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 청구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

이번 사건은 영국 고등법원 가정부 관할 소송에서 한 여성이 당시 4살이던 자신의 딸에게 가혹 행위를 가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또한 7개월 된 그녀의 아들이 2003년 8월에 사망(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성에게는 죽은 두 아이 말고도 LM이라 불리는 5살짜리 딸이 있으며 현재는 입양할 새 부모를 기다리며 입양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역 당국은 언론이 LM 뿐만 아니라 죽은 두 아이와 그 부모를 포함하여 이번 검시(檢屍)에 관련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원을 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강제 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가족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LM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의 입양의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법원에 강제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Time Newspapers』와 『Guy Vasssal-Adams』는 LM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대다수의 언론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보호는 LM에게 한정돼야 하며 검시(檢屍) 보도를 할 때 언론이 부모와 사망한 아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입장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 가정부 수장인 Mark Potter는 판결문을 통해 "검시(檢屍)와 형사 재판을 둘러싼 세상의 이목이 수그러들고 나서도 이번 일로 인한 이야기로 인해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Mark Potter는 "세상의 평판이 LM이 입양될 기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걱정은 전적으로 추측일 뿐이며 현재까지 LM을 입양할 새 부모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LM이 지닌 문제 있는 성격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ark Potter는 "이번 일에 있어 언론의 권리인 제10조가 LM의 불행한 상황에 관련하여 참작되는 제8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Mark Potter는 "한 아이가 그 가족 내의 살인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의 삶에 발생한 혼란과 그 아이가 대면하고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와 공개 정의의 이득에서 일반적으로 기인하는 중요성을 미루어 볼 때, 사건들이 이런 권리들에 규제를 가할 정당할 정도로 충분히 별다르거나 예외적인지의 질문을 상정하고 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ress Gazette 2007년 8월 8일자) □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규제해야" 90.9% "국가에서 규제해야" 63.2% 규제가 압도적

-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최근 일본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유해정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내각부(內閣府)는 2007년 10월 25일 「유해정보에 관한 특별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인 묘사나 외설화상(畵像) 등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정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90.9%에 이르며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잡지, DVD 등의 유해정보 규제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0.8%, 『현재와 같은 정도로도 좋다』는 응답이 13.8%였으며, 유해정보의 규제를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3.2%,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21.8%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1,767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신문협회보』, 2007년 11월 13일자) □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영화 저작권 불인정

- 일본 도쿄 지방법원 판결 -

북한의 영화를 무단으로 뉴스프로에서 사용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북한 문화부 산하의 행정기관인 「조선영화수출입사(社)」와 일본의 배급회사가 日本텔레비전과 후지텔레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 지방법원 제47부는 2007년 12월 14일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른조약(Treaty of Berne)상의 저작권보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지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日本텔레비전은 2003년 6월, 후지텔레비전은 동 12월 뉴스프로에서 북한 영화의 일부를 허락 없이 방송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간 조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하지 않은 국가와의 사이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의무관계가 국가로서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12월 26일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1월 22일자) □

공표 후 50년이 경과한 영화의 저작권은 소멸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1953년에 공개된 미국 영화 「센」 등을 염가의 DVD로 만들어 판매한 두 회사에 대해, 미국의 파라마운트사 등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2007년 12월 18일 『공표 후 5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저작권은 소멸했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 판결로 파라마운트사 측의 패소는 확정되었다.

이 소송에서는 2004년 1월에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이 영화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과 관련, 개정시점에서 50년을 경과한 1953년 작품의 저작권 유무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문화청은 1953년 작품의 보호기간도 연장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으나, 사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문협회보』, 2008년 1월 22일자) □